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8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1. 「해운법」 제41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관련입니다.
2.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6년 8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지원 계획

1) 지원 대상: 2026년 8월 유류 구입분

* 2026년 6~7월 유류 구입분 추가 신청 가능

2) 대상 선박: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 선박

3) 대상 유류: 실제 내항화물운송사업 수행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

* 혼합 블랜딩유는 경유 함유량을 산정하여 지급(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4) 지급 단가

유류세보조금	경유세율 인하 연장에 따른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단가 변경 - '26.03.01 ~ '26.03.26 까지 경유(MGO) 1ℓ 당 292.665원 - '26.03.27 ~ '26.08.31 까지 경유(MGO) 1ℓ 당 213원 * 출하전표상 제조장에서 반출한 일자를 기준
유가연동보조금*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 × 70% - 지급 상한액 1ℓ 당 183.21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라 유류세 감면을 받는 경우 1ℓ 당 104.25원을 한도로 지급(한국해운조합 공급 유류분) * 공급 시기별(주간) 지급 단가는 아래 붙임(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 참고

*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의 판매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초과함에 따라 금번 신청 대상 포함

나.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BDR 등 관련 증빙 서류

* 신청서식: 우리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 알림소통 - 알림 - 공지사항

2) 제출 기간: 2026.09.01.(화) ~ 09.04.(금)(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한편,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①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해운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른 ②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처분 외에 해운법 제56조3항에 따른 ③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8월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계획 1부.

2.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 등록 및 집행 절차 안내 1부.

3.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판매가격(6~8월)

4.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양식) 1부.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수신자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부산에부산선주협회장,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귀하

주무관

민정원

행정사무관

이외경

과장

전결 2026. 8. 24.

정태섭

협조자

시행 선원해사안전과-14967

접수

우 48098 부산 동구 총장대로 351, (4875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https://busan.mof.go.kr>

전화번호 051-609-6313

팩스번호 051-609-6319

/ in23015006@mail.go.kr

/ 대국민 공개